

【 32 】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7. 6. 18.

제안자 : 박영원 의원외 2인

□ 제안이유

장흥국민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는데 있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단체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하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을 추가함.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30인"을 "20인"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별첨1】"을 같이 한다.

안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

안 제12조제3항 중 "선량한"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단체”라 함은 <u>30인</u>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1. - 5. (제정안과 같음) 6. ----- <u>20인</u> ----- -----</p>
<p>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입장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       (<u>신설</u>)</p> <p>7. (생략)</p>	<p>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 ----- 1. - 6. (제정안과 같음) 7. <u>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u> 8. (제정안과 같음)</p>
<p>제12조(사용제한)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내 입장 및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선량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u></p>	<p>제12조(사용제한) ----- ----- 1. - 2.(제정안과 같음) 3. <u>(삭제)</u> ----- -----</p>

[별지]

## 입장료(제4조관련)

(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당일 20:00까지 유효함	
개 인	어 른	1,000	
	청소년 · 군인등	800	
	어 린 이	600	
단 체	어 른	800	
	청소년 · 군인등	600	
	어 린 이	500	

비고 : 어른 :백색, 청소년,군인등:황색, 어린이:녹색, 단체용:청색

●障碍人福祉法〔1989.12.30〕  
法律第4179號全文改正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障碍人對策에 관한 國家, 地方自治團體등의 責務를 명백히 하고 障碍發生의豫防과 障碍人の 醫療·訓練·보호·教育·雇傭의 增進·手當의 支給등 障碍人福祉對策의 基本이 되는 事業을 정함으로써 障碍人福祉對策의 綜合的 추진을 도모하며, 障碍人の 自立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障碍人の 生活安定에 기여하는등 障碍人の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障碍人”이라 함은 肢體障礙, 視覺障礙, 聽覺障礙, 言語障礙 또는 精神遲滯등 精神的 缺陷(이하 “障碍”라 한다)으로 인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개인의 尊嚴等)** ①障碍人은 개인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處遇를 받는다.

②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障碍人에게는 國家·社會를 구성하는 一員으로서 政治·經濟·社會·文化 기타 모든 분야의 活動에 참여할 機會가 보장된다.

**第4條 (自立에의 努力)** ①障碍人은 그가 가지고 있는 能力を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社會·經濟活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障碍人の 家族은 障碍人の 自立促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 (國家, 地方自治團體와 國民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을豫防하고, 障碍의 早期發見에 대한 國民의 關心을 높이고 自立을 지원하여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障碍人の 福祉를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모든 國民은 障碍發生의豫防, 障碍의 早期發見과 障碍人の 福祉增進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6條 (障碍人福祉委員會)** ①障碍人福祉에 관한 사항을 審議·建議하기 위하여

## 第38編 社會福祉 第5章 兒童·老人·障礙者·母子福祉 障碍人福祉法

死後에 障碍人の 生活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特別히 配慮하여야 한다.

**第12條 (教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그 年齡·能力·障礙의 種別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教育의 내용과 方法의 개선 및 特殊教育施設의 設置를 도모하는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の 教育에 관한 調査·研究를 促進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에게 專門的 職業教育을 실시하는 制度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모든 教育機關은 障碍를 이유로 障碍人の 入學志願 또는 入學에 不利한 措置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教育機關은 障碍인이 불편없이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施設의 整備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3條 (職業指導)**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 職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職業指導, 職業訓練 및 職業紹介의 실시 기타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에게 적합한 職種 및 職域에 관한 調査研究를 促進하여야 한다.

**第14條 (住宅의 보급)**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을 위하여 日常生活에 적합한 住宅을 보급하고 整備함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5條 (文化環境의 整備等)**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の 文化的 慾慾을 고취시키고, 障碍인이 自主的이고 積極的으로 餘暇活用 및 스포츠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關聯施設이나 設備 기타 環境을 整備하고 文化·스포츠등에 관한 活動의 지원 기타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6條 (經濟的 부담의 輕減)**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및 이를 扶養하는 者의 經濟的 負擔輕減을 도모하고 障碍人の 自立促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稅制上의 措置, 公共施設의 利用料등의 減免 기타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地方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운영하는 運送事業者는 障碍人 및 이를 扶養하는 者의 經濟的 부담의 輕減을 도모하고 障碍人の 自立을 促進하기 위하여 障碍人 및 그 介護人の 運賃등을 輕減하는 施

第38編 社會福祉 第5章 兒童·老人·障礙者·母子福祉 障碍人福祉法

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7條 (法制上의 措置等)**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上 및 財政上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第3章 福祉措置

**第18條 (調查)** ①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의 적절한 施行을 위하여 障碍人의 實態調査를 5年마다 실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方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障碍人 登錄)** ①障碍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保護者は 障碍狀態 기타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은 第1項에 의하여 登錄한 障碍人이 第2條의 基準에 해당할 때에는 障碍人手帖(이하 “手帖”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은 第1項에 의하여 登錄한 障碍人이 第2條의 基準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趣旨를 登錄을 申請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2項에 의하여 手帖을 교부받은 者,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 保護者は 당해 障碍人이 第2條의 基準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死亡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手帖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市·道知事은 第4項의 경우에 手帖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第6項의 障碍診斷命令을 거부하거나 第7項에 위반한 경우에는 手帖의 반환을 命할 수 있다.

⑥市·道知事은 障碍狀態의 變更에 따른 障碍級數의 조정을 위하여 障碍診斷을 命할 수 있으며 障碍人の 障碍認定 및 級數查定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中央障碍判定委員會를, 서울特別市·直轄市·道에 地方障碍判定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⑦手帖은 讓渡하거나 貸與하지 못한다.

⑧障碍人の 登錄·手帖의 교부와 반환·障碍診斷 및 障碍判定委員會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0條 (再活相談 및 入所등의 措置)** ①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 또는 區廳長(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市長·郡

2.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 ② 위촉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 장애인복지지도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지도
2. 장애인에 대한 검진·진료 또는 보건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검진·진료 또는 보건지도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 교부와 사용·수리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의 직업적성평가·직업훈련 및 취업일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가 또  
는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보수) 위촉한 장애인복지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기말수당·정근수  
당·직무수당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4조** (학인대상시설의 종류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수첩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  
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실태조사의 종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  
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  
시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제16조** (실태조사의 방법) 제15조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94.12.23>